|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집행화해 문제에 관한 규정**  2018년 2월 23일 발표  집행화해를 진일보 규율하고 당사자•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는 자의하에 협상을 거쳐 화해합의를 달성하여 법에 따라 효력발생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권리•의무 주체, 이행 목적물, 기한, 장소와 방식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화해합의는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2조 화해합의 달성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정지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면으로 된 화해합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된 화해합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당사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  (3) 당사자들이 구두로 화해 합의를 달성하였음에 따라 집행관이 화해 합의의 내용을 집행조서에 기록한 후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제3조 집행이 정지된 후 집행신청인이 압류(査封•扣押•凍結)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대리인이 집행화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의견일치를 본 후 집행화해합의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집행화해합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집행관이 변경된 내용을 집행조서에 기록한 후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도 있다.  제6조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변제하기로 집행화해합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현물변제 재정(裁定)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제7조 집행화해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법 제101조에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유관기구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화해합의서에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8조 집행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사건 종결 처리를 해야 한다.  제9조 피집행인인 일방 당사자가 집행화해합의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신청인은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 재개를 신청하거나 집행화해합의서 이행청구 소송을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 재개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집행신청기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당사자의 집행화해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집행 재개 신청기한은 집행화해합의서에 약정한 이행기간의 마지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집행신청인이 피집행인의 집행화해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 재개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유 성립이 확인된 경우 집행 재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 재개 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1) 집행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집행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2) 집행화해합의서에 약정한 이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단, 계약법 제108조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3) 피집행인이 집행화해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4) 집행 재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경우.  제12조 집행 재개 또는 집행 재개 신청 기각이 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당사자•이해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집행 재개 후 집행신청인이 집행화해합의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인이 제기한 집행화해합의서 이행청구 소송을 접수한 후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을 종결하는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취해진 압류(査封•扣押•凍結) 조치는 소송 중 가압류 조치로 자동 전환된다.  제15조 집행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집행신청인은 피집행인의 이행 지연, 이행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집행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화해합의서가 무효하다거나 집행화해합의서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당사자•이해관계자는 집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화해합의서가 무효로 확인되었거나 취소된 후 집행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집행화해합의서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 제기는 경우 집행신청인의 집행 재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집행 재개 후 집행화해합의서에 따라 이미 이행된 부분은 법에 의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공제 행위가 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당사자•이해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집행화해합의서에 담보 조항을 약정하였고 담보인이 인민법원에 피집행인이 집행화해합의서 불이행 시 자각적으로 직접적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승낙을 한 경우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이 재개된 후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과 담보 조항의 약정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집행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이 당사자들의 자의하게 달성되었으나 인민법인에 제출하지 아니한 화해합의서 또는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기타 당사자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화해합의서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화해합의서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기존 효력발생 법률문서의 집행을 종결하는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2) 화해합의서에 약정한 이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 정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단, 계약법 108조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피집행인이 화해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집행 정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4) 피집행인이 화해합의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5) 화해합의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경우 이의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和解若干问题的规定**  2018年2月23日发布    　　为了进一步规范执行和解，维护当事人、利害关系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规定，结合执行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当事人可以自愿协商达成和解协议，依法变更生效法律文书确定的权利义务主体、履行标的、期限、地点和方式等内容。  　　和解协议一般采用书面形式。  　　第二条 和解协议达成后，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可以裁定中止执行：  　　（一）各方当事人共同向人民法院提交书面和解协议的；  　　（二）一方当事人向人民法院提交书面和解协议，其他当事人予以认可的；  　　（三）当事人达成口头和解协议，执行人员将和解协议内容记入笔录，由各方当事人签名或者盖章的。  　　第三条 中止执行后，申请执行人申请解除查封、扣押、冻结的，人民法院可以准许。  　　第四条 委托代理人代为执行和解，应当有委托人的特别授权。  　　第五条 当事人协商一致，可以变更执行和解协议，并向人民法院提交变更后的协议，或者由执行人员将变更后的内容记入笔录，并由各方当事人签名或者盖章。  　　第六条 当事人达成以物抵债执行和解协议的，人民法院不得依据该协议作出以物抵债裁定。  　　第七条 执行和解协议履行过程中，符合合同法第一百零一条规定情形的，债务人可以依法向有关机构申请提存；执行和解协议约定给付金钱的，债务人也可以向执行法院申请提存。  　　第八条 执行和解协议履行完毕的，人民法院作执行结案处理。    第九条 被执行人一方不履行执行和解协议的，申请执行人可以申请恢复执行原生效法律文书,也可以就履行执行和解协议向执行法院提起诉讼。  　　第十条 申请恢复执行原生效法律文书，适用民事诉讼法第二百三十九条申请执行期间的规定。  　　当事人不履行执行和解协议的，申请恢复执行期间自执行和解协议约定履行期间的最后一日起计算。  　　第十一条 申请执行人以被执行人一方不履行执行和解协议为由申请恢复执行，人民法院经审查，理由成立的，裁定恢复执行；有下列情形之一的，裁定不予恢复执行：  　　（一）执行和解协议履行完毕后申请恢复执行的；  　　（二）执行和解协议约定的履行期限尚未届至或者履行条件尚未成就的，但符合合同法第一百零八条规定情形的除外；  　　（三）被执行人一方正在按照执行和解协议约定履行义务的；  　　（四）其他不符合恢复执行条件的情形。  　　第十二条 当事人、利害关系人认为恢复执行或者不予恢复执行违反法律规定的，可以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提出异议。  　　第十三条 恢复执行后，对申请执行人就履行执行和解协议提起的诉讼，人民法院不予受理。  　　第十四条 申请执行人就履行执行和解协议提起诉讼，执行法院受理后，可以裁定终结原生效法律文书的执行。执行中的查封、扣押、冻结措施，自动转为诉讼中的保全措施。  　　第十五条 执行和解协议履行完毕，申请执行人因被执行人迟延履行、瑕疵履行遭受损害的，可以向执行法院另行提起诉讼。  　　第十六条 当事人、利害关系人认为执行和解协议无效或者应予撤销的，可以向执行法院提起诉讼。执行和解协议被确认无效或者撤销后，申请执行人可以据此申请恢复执行。  　　被执行人以执行和解协议无效或者应予撤销为由提起诉讼的，不影响申请执行人申请恢复执行。  　　第十七条 恢复执行后，执行和解协议已经履行部分应当依法扣除。当事人、利害关系人认为人民法院的扣除行为违反法律规定的，可以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提出异议。  　　第十八条 执行和解协议中约定担保条款，且担保人向人民法院承诺在被执行人不履行执行和解协议时自愿接受直接强制执行的，恢复执行原生效法律文书后，人民法院可以依申请执行人申请及担保条款的约定，直接裁定执行担保财产或者保证人的财产。  　　第十九条 执行过程中，被执行人根据当事人自行达成但未提交人民法院的和解协议，或者一方当事人提交人民法院但其他当事人不予认可的和解协议，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提出异议的，人民法院按照下列情形，分别处理：  　　（一）和解协议履行完毕的，裁定终结原生效法律文书的执行；  　　（二）和解协议约定的履行期限尚未届至或者履行条件尚未成就的，裁定中止执行，但符合合同法第一百零八条规定情形的除外；  　　（三）被执行人一方正在按照和解协议约定履行义务的，裁定中止执行；  　　（四）被执行人不履行和解协议的，裁定驳回异议；  （五）和解协议不成立、未生效或者无效的，裁定驳回异议。  　　第二十条 本规定自2018年3月1日起施行。  　　本规定施行前本院公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